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세계인권선언(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), UN 글로벌 콤팩트(UN Global Compact), 국제노동기구(ILO) 핵심 협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및 노동 관련 기준을 존중하여, 아동 노동 금지 및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1. "연소자"란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2. "아동"이란 만 15 세 미만의 연소자를 말한다. 단,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 세 미만 인 사람을 포함한다.

제 3 조(기업의 의무)

- ① 이 규정은 헌법에서 정한 아동에 대한 보호원칙을 따르고 있으며,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아동이 노동으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의무교육이 마치기 전의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. 제 4 조(아동 고용 금지) 회사는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채용 시에는 만 18 세 이상을 채용하여, 아동 고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.

제 5 조(채용 확인)

- ① 인사부서에서는 신규 채용 시 신규 채용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공적으로 인정된 서류를 통해 나이를 확인하며, 만 18 세 미만일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는다.

- ② 정부 또는 기타 교육훈련 기관과 연계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과정은 예외로 인정하나, 이 경우에도 만 15 세 미만의 아동은 채용하지 않는다.

제 6 조(아동 노동 확인 시 조치 사항)

- ① 아동 근로자가 발견될 경우 회사는 다음의 사항들을 조치한다.
- 회사는 그 고용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의무교육을 중지하지 않도록 조치한다.
 - 회사는 즉시 해고보다는 아동 노동의 원인이 빈곤 등의 경제적 어려움인지 확인하고 노숙, 기아 등을 겪지 않도록 아동의 가족에게 일거리 제공 등의 대안을 검토한다.

제 7 조(연소자 근무 조건)

- ① 회사가 제 5 조 제 2 항과 같이 불가피하게 연소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연령을 증명하는 문서,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,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다.
- ② 근로시간은 1 일에 7 시간, 1 주에 35 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 일에 1 시간, 1 주에 5 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연소자를 심리적, 감정적, 성적 남용이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.
- ④ 회사는 지하, 수중, 높은 곳, 폐쇄된 곳에서 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.
- ⑤ 회사는 위험한 기계나 장비를 취급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.
- ⑥ 회사는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거나 높은 온도, 심한 소음과 진동이 있는 곳에 만 18 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.

제 8 조(건강 검진)

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연소자도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.

제 9 조(협력 업체)

- ① 도급 등의 사유로 사내에서 근무하는 협력 업체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, 발견하는 즉시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, 보호 등 조치를 실시한다. ② 회사는 가능한 사내에서 근무하는 협력 업체 직원들의 명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아동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한다.

[개정이력]

개정판	개정 날짜	변경 설명	시인 역사
A	2024 년 5 월 1 일	새로운 정책 발표	D. 민병대